

시험운항허가증

운항자	성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주소
허가번호	시험운항 허가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	
출발지	시험운항구역	
기구의 종류	기구의 명칭	
시험운전의 목적 건조[] 개조[] 수리[]		

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경찰서장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시험운항허가증은 허가기간 동안 소지하거나 발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시험운항허가증은 시험운항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발급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.
- 시험운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시험운항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고 다시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시험운항이 가능한 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입니다.